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92 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김재원 · 김현정

강유정 • 한병도 • 한민수

한정애 · 임미애 · 이용우

박정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 장에 소화설비,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 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 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, 실제로 방 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

방연(防煙)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(안 제9조의3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다중이용업소의 방연마스크)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(防煙)마스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갖추어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4.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방연마스크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3(다중이용업소의 방연마
	스크)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
	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
	장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
	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
	는 방연(防煙)마스크를 행정안
	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<u>갖추어야 한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갖추
	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제2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25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2의3. (생 략)	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4.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방
	연마스크를 기준에 따라 갖추
	<u>지 아니한 자</u>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